제 2361호 2015. 04. 30. 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: 공 보 실 장 장 운 기

전화: 3396-4965
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

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"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-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
-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
람						



2361호 2-2 2015.04.30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323호

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『중구~성동구계간 도로확장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4월 2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 업 명 : 중구~성동구계간 도로확장공사

2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중구청, 서울특별시 성동구청

3. 공고(열람)기간 : 2015.05.01. ~ 2015.05.15.

4.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가로환경과 (☎02-3396-6022)

-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의 소유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방문

5. 공시송달 내역

בין גיון	7] 🗆	편입면적 (m²)	토지	71]2] 0]	ען ד	
토지 소재지	지 목		성 명	주 소 지	재결일	비고
중구 신당동 843-12	대	0.09		캘리포니아주		
성 동구 금호동1210-1	대 0.01		권○라○아	밴나이스시	2015. 01.30.	폐문 부재
중구 신당동843-12외 1	조경수,조경석, 메쉬펜스	1식		헤이븐헐스트	01.30.	T-111

6. 기타 안내사항

-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 8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 청 할 수 있으며, 이의 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, 신청요지 및 이유를 이의신청서에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"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"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"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"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그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